

한국진공학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한국진공학회 (이하 본 학회) 세칙 제23조 1항 및 제24조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본 학회 정관 제19조 3항의 회장 선출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관한 세칙 제23조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이전에 구성한다.
3. 위원회는 정회원 자격을 갖춘 위원장 1인과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회장 후보의 자격 심의 및 확정
2.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선거결과 및 당선자의 공고
3. 기타 선거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제 4조 [선거에 관한 공고]

1. 위원장은 선거일 70일 이전에 선거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공고를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2. 후보자 추천 접수기간은 20일로 한다.
3. 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유권자에게 선거 일정과 후보자의 이력서 및 소견서를 유인물이나 기타 매체를 통하여 발송하여 홍보한다.

제 5조 [회장 후보 자격 및 확정]

1. 회장 후보의 자격은 평의원으로 한다. (정관 제12조 1항)
2. 회장 후보는 평의원 20명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하여 추천된다.
3. 회장 후보로 추천된 자는 후보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보 수락 의사와 함께 이력서와 소견서를 위원회에 발송함으로써 후보자로 확정된다.

제 6조 [선거 일정 및 방법]

1. 차기 회장 선거는 현 회장 임기 만료 5개월 이전에 실시한다.
2. 선거는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우편 투표 방법으로 시행한다.
3. 후보자나 그 지지자들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위한 유인물이나 기타 매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것을 금한다.
4. 본 조 3항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후보의 자격박탈이나 선거무효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건의는 위원 1인 이상의 발의로 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5.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 실행 일정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조 [투표권] 투표권은 정회원으로서 최근 3년간 2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주어진다.

제 8조 [당선자 확정 및 공고]

1. 본 학회 정관 제12조 1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한다.
 - 2-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 2-2.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당선자로 확정된다. 단,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 공고, 일정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3. 위원장은 당선자 확정 또는 재선거 결정 후 즉시 투표결과를 공고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9조 [해산] 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선거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부 칙 (1996. 2. 15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7. 1 개정)

부 칙 (2010. 11. 5 개정)